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8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9.

발 의 자:서미화・김 윤・윤종군

정혜경 • 이병진 • 윤건영

안도걸 • 조인철 • 박정현

채현일 · 오세희 · 전진숙

황정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<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>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.3%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%로 집계되었음.

또한,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, 전보,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.2%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 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 타남.

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, 전보,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,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.

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 · 협박, 위계에 의한 업무

수행 방해,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·변조,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,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,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, 긴급구제 조치 방해,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,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(안 제57조).

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7조(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와 불이익 조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
- 2.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(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)	제57조(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와
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	불이익 조치) 다음 각 호의 어
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	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
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	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
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	1.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
	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
	2. 제55조를 위반하여 불이익
	조치를 한 사람